무역상무연구
제75권
2017. 8, pp. 29~48.

논문접수일 2017. 07. 24.
심사완료일 2017. 08. 17.
게재확정일 2017. 08. 18.

UCC상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민 주 희*

Ⅰ. 서 론
Ⅱ. 소유권유보하에서의 대항요건
Ⅲ. 소유권유보의 유형
Ⅳ. SGA상 소유권유보와의 비교고찰
Ⅴ. 결 론

주제어 : 소유권유보,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의 완성

Ⅰ. 서 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데 매도인의 이러한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만일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면, 물품을 인도한 매도인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물품의 점유는 상실하였어도 물품의 소유권은 유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대금지급불능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이행될 때까지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소유권유보조항(Retention of title clause)을 계약서에 삽입하게 된다.

*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E-Mail : jhmin07@kmu.ac.kr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로 칭함)에서는 소유권유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지만 소유권유보의 권리는 담보권(a security interest)[1]의 효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소유권유보는 담보(charge)로써 담보권(security interest)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2] 즉 소유권유보의 권리를 담보권의 효과와 동등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계약상 소유권을 유보하고자 하는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사실 담보권(security interest)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이들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UCC에서는 담보권을 그 유형에 따라 각각 개별 규정으로 규율하는 대신 하나의 단일화된 규정(a single set of regulations)으로 제정하고 적용함으로써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3]

계약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유보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자신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선취득권(priority)을 획득하는 것이다. UCC는 계약상 소유권유보조항에 의거하여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매매목적물에 대한 선취득권을 부여함으로써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비하여 계약상 필요한 보장(security)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용적 목적을 강조하여 개정된 UCC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유보를 통해 계약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합리적 기대를 반영하였으며, 소유권유보를 통한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4]

본 연구에서는 소유권유보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UCC상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5] 우선 UCC하에서 계약상 매도인이 소유권유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소유권유보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

1) UCC § 1-201(b)(35)에 따르면 담보권은 대금지급 혹은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동산(personal property) 혹은 정착물(fixtures)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 1-201(b)(35)에서는 § 2-401상에 언급된 소유권유보 권리의 효과가 담보권의 효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덧붙여 있다.

2) UCC § 2-401(1).

3) William Davies, "Romalpa Thirty Years on - still an Anigma?", *Hertfordshire Law Journa*l, Vol. 4, 2006, p. 16.

4) *Ibid*; Rolf B. Johnson, "A Uniform Solution to Common Law Confusion: Retention of Title under English and U.S. Law",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1994, p. 100; 민주희, "SGA상 "Romalpa"조항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7, p. 406.

5) 김재국("동산의 소유권유보", 민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대한민사법학회, 2003), 양형우("所有權留保에 관한 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등의 논문은 한국 민법상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이고, 박훤일("改正美動産擔保法의 國內擔保法制에 대한 示唆點", 경희법학 제37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민주희("SGA상 "Romalpa"조항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7)는 미국과 영국에서의 소유권유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본 논문은 UCC상의 소유권유보를 중심으로 SGA상의 소유권유보와 비교고찰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한다. 또한 영미법계의 다른 축인 영국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이하 SGA로 칭함)상의 소유권유보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이 어떤 것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UCC 혹은 SGA가 준거법으로 선택되는 경우 실무상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Ⅱ. 소유권유보 하에서의 대항요건

1. 담보권의 설정(Attachment)

UCC상 소유권유보는 담보로써 담보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UCC상 담보권에 관한 규정을 고찰하여야 한다. UCC하에서 발생하는 담보권은 UCC § 9에서 규정하고 있는데,[6] 우선 담보권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하여 담보권이 담보물(the collateral)에 귀속됨으로써 설정(attachment)되어야 한다.[7] 따라서 담보권이 담보물에 귀속되기 전까지 담보권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담보권자(secured party)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즉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물품에 대하여 담보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대금지급불능인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첫째, 담보권자(creditor)는 담보물에 대한 대가(value)를 부여 하여야 하고, 둘째, 담보제공자(debtor)인 매수인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혹은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권한(power)을 보유하여야 하고, 셋째, 담보권을 형성하는 담보합의(security agreement)가 있어야 한다.[8]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담보권이 담보물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담보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담보권자가 담보를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9]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매매목적물인 물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6) UCC § 9-109에서 소유권유보하에 발생한 담보권은 UCC § 9에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7) UCC § 9-203(a).
8) UCC § 9-203(b).
9) James J. White, Robert S. Summers, *Uniform Commercial Code*, West Publishing Co, 2010, p. 1192.

것도 대가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즉 담보권은 대금지급 혹은 기타 의무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10]

두 번째 요건에서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11]는 것은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제한적인 소유권(short of full ownership)을 보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12]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제공자가 자신이 보유한 권리보다도 더 큰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물품이 담보제공자인 매수인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다할지라도, 담보권자인 매도인이 물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매수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13] 이러한 경우 담보권자인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어도 담보제공자인 매수인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담보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증되어야(authenticate) 한다.[14] 사실상 담보합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서면으로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단지 서면으로 작성될 것에 제한되지 않고 전자적 장치에 기록되는 것 또한 가능하다.[15] 담보합의에는 담보물(the collateral)에 대한 명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채무자의 모든 동산(personal property)'과 같은 너무 포괄적인 명세는 적합하지 않고 담보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담보물의 종류 혹은 유형이 언급되어야 한다.[16]

---

10) Steven L. Harris, Charles W. Mooney JR., *Security Interest in Personal Property(Case, Problems and Materials)*, Foundation Press, 2011, p. 138.

11) 이는 'nemo dat quod non habet'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써 담보제공자는 오직 담보물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Sean Thomas, "The Role of Authorization in Title Conflicts Involving Retention of Title Clauses: Some American Lessons", *Common Law World Review*, Vol. 43, 2014, p. 45; Steven L. Harris, Charles W. Mooney JR., *op. cit.*, p. 138).

12) UCC § 9-203 Official Comment 6.

13) UCC § 9-319.

14) UCC § 9-203 Official Comment 3.

15) James J. White, Robert S. Summers, *op. cit.*, p. 1192.

16) UCC § 9-108(c); Grant Gilmore, *Security Interest in Personal Property*, The Lawbook Exchange Ltd., 1999, p. 349.

2. 담보권의 완성(Perfection)

1) 담보권의 완성을 위한 요건

담보권이 담보물에 귀속 되어 담보권이 설정(attachment)되는 것은 채권자인 매도인과 채무자인 매수인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채권자인 매도인이 채무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담보권의 완성(perfection)은 매도인과 제3의 담보권자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매도인이 제3의 담보권자에 대한 대항력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보권의 완성은 첫째, 금융명세서(financing statement)의 등록(filing), 둘째, 담보권자의 점유(possession), 셋째, 지배(controlling)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선 담보권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써 담보권자는 금융명세서에 담보제공자의 성명, 담보권자의 성명, 담보물을 표시하여 등록사무소에서 등록하여야 한다.[17] 금융명세서는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며 만기 6개월 전에 계속명세서(a continuation statement)를 등록하여 연장할 수 있다.[18]

둘째,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점유(possession)하는 경우 담보권이 완성된다.[19]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보권자를 대리하는 제3자가 담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담보권이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20] 제3자가 담보권자를 대신하여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권리증권(a document of title)[21]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자신이 담보권자의 이익(benefit)을 위하여 담보물을 점유하는 것임을 확증하여야 담보권이 완성된다.[22] 반면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의 담보권 완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3자인 수탁자(bailee)가 물품에 대한 유통가능 권리증권(negotiable document)을 발행하고 물품을 점유한다면, 그 권리증권상의 담보권을 완성하여야 담보물인 물품에 대한 담보권이 완성된다.[23] 제3자인 수탁자가 유통불능 권리증권(non-negotiable document)을 발행하고 물품을 점유한다면, 수탁자는 담보권자를 대신하여 담보물인 물품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

17) UCC § 9-502.
18) UCC § 9-515(d).
19) UCC § 9-313(a).
20) 담보권의 완성을 위해 담보물을 점유하는 것은 금융명세서를 등록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담보제공자는 사실상 담보물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의 완성을 위해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도록 하는 것은 드문 상황일 것이다(James J. White, Robert S. Summers, *op. cit.,* p. 1206).
21) 권리증권은 선하증권 혹은 창고증권(a warehouse receipt)등을 의미한다(UCC § 9-102(a)(30)).
22) UCC § 9-312(c).
23) UCC § 9-312(d).

것을 기록(a record)함으로써 확증하여야 한다.[24]

셋째, 담보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지배(control)는 담보권을 완성한다.[25] 담보권자의 지배는 무형의(intangible)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자의 점유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고, 투자재산(investment property), 예금채권(deposit account), 신용장 권리(letter of credit rights), 전자식 동산저당증권(electronic chattel paper)에 적용된다.[26] 투자재산에 대한 지배는 ① 유가증권상의 권리자를 담보제공자가 아닌 담보권자로 기재하는 경우, 혹은 ② 유가증권 발행자(security intermediary)가 담보제공자의 승인(approval) 없이 담보권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발생한다.[27] 예금채권에 대한 지배는 예금을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된다.[28] 신용장 권리에 대한 지배는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매입은행이 신용장상의 대금 양도에 동의(consent)한 경우 성취된다.[29]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신용장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매입은행의 동의를 전제로 매도인과 거래한 제3자는 신용장상의 금액을 매도인으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신용장 권리를 지배(control)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식 동산저당증권(electronic chattel paper)의 지배는 승인된 사본(a single authoritative copy)에 담보권자를 양수인으로 명백히 규정하는 등의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한다.[30]

2) 완성된 매수금담보권의 우선순위(priority)

매매목적물인 물품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권으로써 매수금담보권(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 PMSI)이 있다. 제3의 담보권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 담보물을 등록하는 경우 가장 먼저 등록한 담보권자에게 선취득권이 인정되나(the first-to-file-or-perfect rule)[31], 금융명세서가 등록됨으로써 매수금담보권이 완성(perfection)되면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먼저 완성된 담보권보다 매수금담보권자에게 특별한 선취득권(a special priority)이 부여된다.[32] 따라서 매수금담보

24) UCC § 9-313(c).

25) 담보제공자(debtor)와 담보권자의 합의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지배(control)하면 담보권의 귀속을 통한 담보권 설정(attachment)시 담보합의(security agreement)가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담보권의 설정을 위한 메커니즘의 하나로써 활용될 수도 있다(Terry M. Anderson, Marianne B. Culhane, Catherine L. Wilson, “Attachment and Perfection of Security Invests under Revised Article 9: A ”Nuts and Bolts“ Primer”, *AIB Law Review*, Vol. 9, 2001, p. 219).

26) UCC § 9-314(a); James J. White, Robert S. Summers, *op. cit.*, p. 1210.

27) UCC § 9-106; Terry M. Anderson, Marianne B. Culhane, Catherine L. Wilson, *op. cit.*, p. 220.

28) UCC § 9-104 Official Comment 3.

29) UCC § 9-107.

30) UCC § 9-105.

31) UCC § 9-322(a).

권이 제3자의 담보권보다 나중에 완성되었을지라도 매수금담보권자는 먼저 완성된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매수금담보권은 먼저 담보권을 완성한 담보권자에게 선취득권을 부여하는 원칙의 예외라고 볼 수 있다.[33]

매수인인 담보제공자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을 전매함으로써 취득한 대가(proceeds)[34]가 있는 경우, 매수금담보권자인 매도인이 담보물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도 경합되는 제3의 완성된 담보권자보다 선취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UCC § 9-324(a)에서는 매수금담보권이 완성(perfection)된 때,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수취한 대가에 대하여 완성된 담보권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선취득권이 인정된다.

Ⅲ. 소유권유보의 유형

1. 기본적인 소유권유보(Simple Retention of Title)

UCC하에서 기본적인 소유권유보조항은 계약에 이를 삽입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본다.[35]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UCC하에서 소유권유보는 담보권의 설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인인 채권자가 매수인인 채무자에게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담보권이 설정(attachment)되어야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담보권자에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담보권이 완성(perfection)되어야 한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담보권이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담보권이 담보물에 귀속되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의 권리가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의 권리와 우선 순위를 다투는 경우에 담보권이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Usinor Industeel v Leeco Steel Products Inc. 사건[36]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철강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매수인은 해당 물품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전매하고자 하였으나 전매가 원활하게 진

32) UCC § 9-317(e); UCC § 9-324(a); James J. White, Robert S. Summers, *op. cit.,* p. 1285.
33) Steven L. Harris, Charles W. Mooney JR., *op. cit.*, p. 257.
34) 대가(proceeds)는 금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매매 등을 통해 수취한 유형 혹은 무형의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UCC § 9-102(a)(64)).
35) Rolf B. Johnson, *op. cit.*, p. 121.
36) 209 F. Suup. 2d 880 (N.D.Ill. 2002).

행되지 않았고, 철강을 구매하기 위하여 LaSalle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매도인에게 완전한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법원은 소유권유보조항하에서 매도인이 가지는 권리는 UCC상 담보권(a security interest)으로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유권유보조항 하에서 매도인이 제3의 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명세서(financing statement)의 등록(filing)이 이루어짐으로써 담보권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명세서가 등록되지 않아 담보권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은 미완성된 담보권(unperfected security interest)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반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대출해준 LaSalle 은행은 금융명세서 등록함으로써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담보권(security interest)을 보유하고 있었다. 법원은 매도인이 소유권유보조항 하에서 담보권을 완성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보다 선취득권을 보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담보권을 완성하지 않았고 매수인의 또 다른 담보권자인 LaSalle 은행은 담보권을 완성하였으므로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한 LaSalle 은행의 권리는 담보권을 완성하지 못한 매도인의 권리보다 우선된다. 결국 소유권유보조항에 따라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선취득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매도인 자신이므로 매도인은 완성된 담보권을 보유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장된 소유권유보(Enlarged Retention of Title)

1) 결합된 물품(Accession of goods)

기본적인 소유권유보보다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리가 연장된 예의 하나로써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을 매수인이 다른 물품과 함께 사용하여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UCC하에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 성질을 상실하지 않은 채 다른 물품에 물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결합(accession)이라고 한다.[37]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여 새로운 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 매수인이 생산한 물품에 결합된다면 여전히 매도인은 자신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UCC § 9-335(b)에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인 담보물에 담보권이 완성(perfection)된 상태로 다른 물품에 결합되면 그 담보권은 여전히 완성된 상태로 유지됨을 규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자신이 인도한 물

37) UCC § 9-102(a)(1).

품에 대하여 완성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을 다른 물품에 결합하여 새로운 완제품을 생산하였을지라도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에 대한 담보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부여된다. 여기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성질을 상실하지 않은 채 결합되었다면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에 대하여만 매도인의 완성된 담보권이 유지되는 것이지 매수인이 새로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의 완성된 담보권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38] 만일 새롭게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도 매도인이 담보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담보합의(security agreement)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다.[39] 예를 들어[40], 매수인인 담보제공자가 매도인 A로부터 컴퓨터를 구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였다. 매수인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이때 매도인의 담보권이 소프트웨어에까지 확장되는지는 담보합의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즉 새롭게 생산된 물품에 까지 담보권이 부여된다는 담보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의 담보권은 자신이 인도한 컴퓨터에 대한 것이지 컴퓨터에 결합된 소프트웨어에 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 B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때에 매도인 A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담보권을 획득하였다면 매도인 A와 매도인 B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담보권의 우선순위는 먼저 담보권의 완성(the first-to-file-or-perfect rule)을 이룬 담보권자가 선취득권을 획득하게 된다.[41] 그러나 매도인 B가 매수금담보권(PMSI)을 획득하였다면 매도인 B가 매도인 A보다 후에 담보권을 완성하였을지라도 매도인 B에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취득권이 인정될 것이다.[42]

2) 합성물(commingled goods)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다른 예는 매수인이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 성질을 상실한 채로 다른 물품에 합성되는 경우이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 성질을 상실하여 다른 물품에 합성되는 경우, 성질을 상실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권은 그 담보의 실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지만 그 물품이 합성되어 새로이 생산된 물품에 매도인의 담보권이 결합되는 것으로 본다.[43]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을 합성하기 전에 매도인이

38) Grant Gilmore, *op. cit.*, p. 849.
39) UCC § 9-335 Official Comment 5.
40) *Ibid.*
41) UCC § 9-335 Official Comment 6.
42) UCC § 9-324(a).
43) UCC § 9-336(b).

그 물품에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였다면, 매도인은 자신이 인도한 물품이 그 성질을 상실하여 합성되었을지라도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여전히 완성된 담보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44] 이는 앞서 성질의 상실 없이 물품이 결합(assession)된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이 인도한 물품에 대하여만 완성된 담보권을 보유하고 담보합의가 없는 이상 매도인은 새로이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완성된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물품이 합성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이 인도한 물품에 완성된 담보권을 보유한다면 새로이 생산된 물품에도 자동적으로 완성된 담보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45]

만일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담보권이 둘 이상 경합된다면 완성된 담보권이 미완성된 담보권에 대하여 선취득권(priority)을 획득하고, 둘 이상의 완성된 담보권이 경합되는 경우 각 담보권은 매수인이 새로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각 담보권의 가치에 비례하여 동일한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46] 즉 매수인이 새로이 생산한 물품에 각 담보권자들이 인도한 물품이 기여한 가치 정도에 따라 담보권이 행사될 것이다.[47] 그러나 경합되는 담보권이 모두 미완성 상태라면, 가장 먼저 형성된 담보권이 우선된다.[48] 예를 들어[49] 매수인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달걀과 밀가루를 구매하였다. 매도인 A는 달걀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고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였고, 매도인 B는 밀가루를 매수인에게 판매하고 미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 A는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였으므로 미완성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 B보다 선취득권을 획득하게 된다. 반면 매도인 A와 매도인 B가 완성된 담보권을 각각 획득하였다면 매도인 A와 매도인 B의 권리는 동일한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들이 보유한 담보권의 가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3. 확대된 소유권유보(Extended Retention of Title)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물품을 전매하였으나 지급불능에 이르게 되면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취득한 대가(proceeds)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서 대가(proceeds)는 금전에만 국한

44) UCC § 9-336(c) and (d).
45) Grant Gilmore, *op. cit.*, p. 849.
46) UCC § 9-336(f); In the Matter of San Juan Packers, Inc. 696 F.2d 707 (9th Cir. 1981).
47) Grant Gilmore, *op. cit.*, p. 853.
48) UCC § 9-322(a)(3).
49) UCC § 9-336 Official Comment 5 and 6.

되지 않고 매매 등을 통해 수취한 유형 혹은 무형의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50] 이러한 경우 UCC에서는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취득한 대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소유권유보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UCC § 9-315에 의하면 전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이미 형성된 담보권은 매수인의 전매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원래의 담보물에 형성된 담보권이 완성된 것이라면 그 담보권은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수취한 대가에 대하여도 완성된 담보권이 자동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본다. 즉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고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금융명세서를 등록함으로써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를 전매하여 취득한 대가에 대하여도 매도인은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한 것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가에 대하여 완성된 담보권은 담보권이 대가에 귀속(attachment)된 후 20일이 지나면 대항력이 상실되지만 담보권의 완성을 위하여 등록된 금융명세서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것이라면, 혹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는 금융명세서가 등록된 등록사무실에 대가를 담보로 하는 금융명세서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20일의 기간이 지난 후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51] 그러나 매수인이 취득한 대가가 금전(cash proceeds)인 경우,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완성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매도인이 완성된 담보권을 무기한(indefinite) 행사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수취한 금전적 대가가 매수인의 다른 자산과 구별되어(identifiable) 관리되어야 한다.[52] 또한 앞서 언급되었듯이 매수금담보권(PMSI)이 완성(perfection)되었다면, 구별되어 관리되는 대가에 형성된 완성된 담보권은 선취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53]

Ⅳ. SGA상 소유권유보와의 비교고찰

1. 기본적인 소유권유보(Simple Retention of Title)

SGA와 UCC하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우선 계약상에 소유권유보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SGA 제19조 제1항에서도 매도인은 계약상 특정 조

50) UCC § 9-102(a)(64).
51) UCC § 9-315(d).
52) UCC § 9-315(a)(2).
53) UCC § 9-324(a).

건(certain conditions)이 이행될 때까지 물품의 처분권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상 특정 조건은 대표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일 것이므로 대금지급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때까지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SGA상 기본적인 소유권유보조항은 매수인의 대금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인 물품에 대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UCC하에서처럼 매도인에게 담보권을 획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54] 이는 SGA에서 기본적인 소유권유보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는 담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SGA상 기본적인 소유권유보하에서는 매도인이 완성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수인의 대금지급불능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UCC하에서 소유권유보의 권리는 담보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유권유보하에서 매도인은 담보물에 귀속된(attached) 담보권 혹은 완성된(perfected) 담보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UCC하에서 만일 매도인이 담보물에 귀속된 혹은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대금지급불능인 매수인에게 혹은 제3의 담보권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UCC상의 매도인은 SGA상의 매도인보다 열악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는 SGA상 기본적인 소유권유보하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획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제19조에 근거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이다.[55] 그러나 UCC하의 매도인이 미완성된 담보권을 보유할지라도 완성된 매수금담보권을 획득하였다면 SGA상의 매도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완성된 매수금담보권은 담보권자에게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특별한 선취득권((a special priority)을 부여하기 때문이다.[56]

2. 연장된 소유권유보(Enlarged Retention of Title)

SGA상 기본적인 소유권유보하에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계약서에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문구를 소유권유보조항하에 삽입하기 시작하였다.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57] 이후 기본적인 소유권유보조항보다 그 적용 범위를 연장한 소유권유보

54) P. S. Atiyah, J. N. Adams, H. MacQueen, *Atiyah's Sale of Goods*, Pearson Education Limited, 2010, p. 468.
55) Clough Mill Ltd v. Geoffrey Martin [1985] 1 W.L.R. 111.
56) UCC § 9-317(e); UCC § 9-324(a); James J. White, Robert S. Summers, *op. cit.*, p. 1285.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항에서 연장된 매도인의 권리 중 하나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새로운 물품을 생산한 경우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은 여전히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이다. 영국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조항 하에서는 담보권의 획득을 요구하지 않지만, 영국회사법(Companies Act 2006) 제878조에 따라 채무자가 등록하지 않은 담보(a charge)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근거 하에 'Romalpa' 조항은 담보권 획득을 전제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영국법은 상업상 혹은 계약상 목적에 의하여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 혹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a charge)를 설정하여 채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특정 채권자에게 독점적 권리(exclusive property)를 부여하지 않으려 한다.[58] 그러나 영국법이 소유권유보가 담보의 설정을 통해 담보권을 형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법원은 연장된 소유권유보조항을 통해 부여되는 매도인의 권리는 담보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결부시켜 버린다.[59] 문제는 계약서에 소유권유보조항을 삽입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은 소유권을 유보할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담보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60] 즉 계약상 'Romalpa' 조항 하에서 담보권의 생성 없이 매도인에게 연장된 권리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보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이후 매수인이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획득하였을지라도 이미 매수인의 채권자들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될 수 밖에 없다.[61] 결국 매도인은 소유권유보조항을 통해 매수인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취득권을 획득하려는 계약의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없다.[62] 이러한 이유로 'Romalpa' 조항 하에서 담보권의 형성을 통해 매도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63]

---

57) [1976] 1 W.L.R. 678.
58) P. S. Atiyah, J. N. Adams, H. MacQueen, *op. cit.*, p. 474; 민주희, 전게논문, p. 397.
59) William Davies, *op. cit.*, p. 12; Re Peachdart Ltd [1984] Ch. 131; Tatung (U.K.) Ltd. v. Galex Telesure Ltd., 1989 B.C.C. 325; Compaq Computer Ltd. v. Abercom Group Ltd., 1991 B.C.C. 484.
60)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Sweet & Maxwell, 2010, p. 281.
61) Rolf B. Johnson, *op. cit.*, p. 101.
62) *Ibid.*
63) William Davies, *op. cit.*, p. 6; 민주희, 전게논문, p. 406.

반면 UCC에서는 소유권유보의 권리를 담보권의 효과에 상응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의 담보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계약의 상업적 목적 달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64] 따라서 UCC하에서 매도인이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는 경우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성질을 상실하지 않은 채 다른 물품에 결합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에 대하여 선취득권을 획득할 수 있고,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성질을 상실하여 다른 물품에 합성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65] 또한 매도인이 완성된 매수금담보권을 획득한다면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도 우선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UCC상 소유권유보하에 매도인은 계약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SGA상 소유권유보하에 있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과 경합하는 경우 담보권 우선순위(priority)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UCC하에서 매도인이 담보권을 보유할지라도 그 담보권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매도인은 SGA하의 매도인과 동일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한 매수인의 담보권자들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새로운 물품을 생산한 경우 매도인이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였다면, UCC에서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 즉 완성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매도인은 우선하여 혹은 동등한 위치에서 완성된 담보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GA하에서는 매도인에게 계약목적상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담보권을 획득하였어도 UCC와는 달리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후순위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 적일 수 있고 혹은 아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66]

3. 확대된 소유권유보(Extended Retention of Title)

매도인은 소유권을 유보함으로써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물품의 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 보다 사실상 대금지급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SGA하에서 기본적 소유권유보는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취득한 대가에 대하여 매도인

64) UCC § 2-401(1); William Davies, *op. cit.*, p 16.
65) UCC § 9-324(a), § 9-335(b), § 9-336(c) and (d).
66) Rolf B. Johnson, *op. cit.*, p. 128.

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Romalpa' 조항을 계약에 삽입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수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기초로 매수인이 전매를 행하고 그로 인해 취득된 전매 대가(proceeds)에 대하여 매도인은 자신의 계약상 권리(beneficial interest)를 확대하고자 한다[67]. 영국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수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매수인이 취득한 전매 대가가 매수인의 다른 자산과 구별되어 관리된다면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취득한 대가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tracing)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된다고 인정한다.[68] 여기서 쟁점은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수임관계가 형성 되었는지의 여부이다. 법원은 계약상 단순히 언급된 문구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간 수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계약 전체의 목적과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한다.[69] 그러나 문제는 영국법원에서 계약상 언급된 수임관계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임관계가 형성되는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70]

영국법원에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가에 대한 추급권을 허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매수인 채무의 성격을 내세운다. 매수인의 채무는 성질상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매수인이 취득한 전매 대가에 대하여 매도인이 주장할 수 권리의 실체가 상실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a charge)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한다.[71] 따라서 계약상 'Romalpa' 조항 하에서 부여된 매도인의 추급권은 인정되지 않고, 매수인이 취득한 전매 대가에 대하여 매도인이 담보권을 획득하는 경우에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장된 소유권유보하에서 매도인에게 계약목적상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담보권을 획득하였을지라도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의 담보권과 우선순위(priority)의 경합을 통하여 매도인의 담보권이 우선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UCC하에서 매도인이 원래의 담보물에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였다면 그 담보권은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취득한 대가에 대하여도 자동적으로 완성된 담보권이 형성된 것으로 확대된다.[72] 다만 매수인이 취득한 금전적 대가는 매수인의 다른 자산과 구별되어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는 SGA하에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제

---

67) Michelin Tyre Co Ltd v. Mackarlane (Glasgow) Ltd (1917) 55 Sc. L.R. 35 HL; Hendy Lennox (Industrial Engines) Ltd v. Grahame Puttick Ltd [1984] 1 W.L.R. 485.

68) Re Andrabell Ltd [1984] 3 All. E.R. 406; Tatung (UK) Ltd v. Galex Telesure Ltd (1989) 5 B.C.C 325; Compaq Computer Ltd v. Abercorn Group Ltd [1991] B.C.C. 484.

69) Compaq Computer Ltd v. Abercorn Group Ltd [1991] B.C.C. 484.

70) 민주희, 전게논문, p. 404.

71) Compaq Computer Ltd v. Abercorn Group Ltd [1991] B.C.C. 484.

72) UCC § 9-315(c).

한조건이 된다. 따라서 UCC하에서 매도인이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고 금전적 대가가 구별되어 관리된다면 SGA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수임관계가 형성되었는지의 논쟁은 UCC하에서 발생할 여지가 없다.

만일 계약에 삽입된 소유권유보조항이 매수인이 취득한 전매 대가에 대하여 추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인에게 허용하지만 매도인이 담보권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SGA 혹은 UCC하에서 매도인의 권리는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취득한 전매 대가에 대하여 매도인이 완성되지 않은 담보권을 획득하였다면, SGA 혹은 UCC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므로 권리의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혹은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매도인이 원래의 담보물에 완성된 담보권을 보유한다면, UCC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수취한 대가에 대하여도 완성된 담보권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므로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에 대하여 선취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는 경우 UCC하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지만 SGA하에서의 매도인은 계약목적상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므로 UCC하에서의 매도인이 계약상 소유권유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73]

Ⅴ. 결 론

본 연구는 UCC상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로서 소유권유보하에서 대항요건 및 소유권유보의 유형을 살펴보고 SGA상 소유권유보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 고찰을 통해 UCC 혹은 SGA가 준거법으로 선택되는 경우 소유권유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UCC상 기본적인 소유권유보하에서 매도인은 담보물에 귀속된 담보권을, 혹은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여야 매수인의 대금지급불능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SGA상 기본적인 소유권유보하에서는 매도인이 완성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SGA 제19조에 따라 매수인의 대금지급불능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SGA

73) Rolf B. Johnson, *op. cit.*, p. 126.

상의 매도인은 담보권을 획득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결국 기본적 소유권유보상의 매도인 권리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기본적인 소유권유보에 만족하는 매도인이라면 UCC가 준거법으로 적용될 때 SGA와 달리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완성되어야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완성하여야 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유보하에서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된 선취득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담보권의 설정 혹은 완성과 별개로 SGA와 UCC하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계약상에 소유권유보조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둘째, UCC상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을 다른 물품에 결합 혹은 합성하여 새로운 완제품을 생산하였을지라도 매도인이 자신이 인도한 물품에 대한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권리를 보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이 담보권 우선순위 원칙의 예외로써 특별한 우선권을 획득하길 원한다면 매수금담보권(PMSI)이 완성되어야 하므로 매수금담보권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금융명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성질의 상실 없이 물품이 결합(assession)된 경우에 매도인은 담보합의를 통하여만 새로이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도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완성된 담보권의 연장을 원하는 매도인은 반드시 담보합의상 그러한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SGA상 연장된 소유권유보하에서는 매도인에게 계약목적상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담보권을 획득하였어도 권리행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합되는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후순위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 적일 수 있고 혹은 아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낮은 가능성을 기대 한다면 자신이 인도한 물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UCC상 확대된 소유권유보하에서 매도인이 원래의 담보물에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였다면 그 담보권은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취득한 대가에 대하여도 자동적으로 완성된 담보권이 형성된 것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상 확대된 소유권유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반드시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이 특별한 우선권을 획하기 원한다면 금융명세서를 등록함으로써 매수금담보권(PMSI)을 완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취득한 대가가 금전일 경우 매수인의 다른 자산과 구별하여 관리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상 매수인이 자신의 다른 자산과 전매를 통해 취

득한 대가를 구별하여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GA상 확대된 소유권유보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담보권의 획득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수임관계가 입증되면 매도인이 계약상 소유권유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영국법원은 수임관계의 형성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계약상 그리고 실질적인 거래 상황 등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임관계하에 있음을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확대된 소유권유보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SGA상에서도 매수인이 취득한 대가를 매수인의 다른 자산과 구별하여 관리될 것을 요구하므로 계약상 매수인이 자신의 다른 자산과 전매를 통해 취득한 대가를 구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GA상 연장된 소유권유보와 동일한 논리로 매도인이 담보권을 획득함으로써 제한적이긴 하지만 확대된 소유권유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한 시도를 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완성된 담보권을, 혹은 매수금담보권을 획득하는 경우 UCC하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확실성이 크지만 SGA하에서의 매도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한계에 부딪힌다.

참 고 문 헌

김재국, “동산의 소유권유보”, 민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주희, “SGA상 “Romalpa” 조항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7.

박훤일, “改正美動産擔保法의 國內擔保法制에 대한 示唆點”, 경희법학 제37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양형우, “所有權留保에 관한 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Grant Gilmore, *Security Interest in Personal Property*, The Lawbook Exchange Ltd., 1999.

James J. White, Robert S. Summers, *Uniform Commercial Code*, West Publishing Co, 2010.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Sweet & Maxwell, 2010.

P. S. Atiyah, J. N. Adams, H. MacQueen, *Atiyah's Sale of Goods*, Pearson Education Limited, 2010.

Rolf B. Johnson, “A Uniform Solution to Common Law Confusion: Retention of Title under English and U.S. Law”,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1994.

Sean Thomas, “The Role of Authorization in Title Conflicts Involving Retention of Title Clauses: Some American Lessons”, *Common Law World Review*, Vol. 43, 2014.

Steven L. Harris, Charles W. Mooney JR., *Security Interest in Personal Property(Case, Problems and Materials)*, Foundation Press, 2011.

Terry M. Anderson, Marianne B. Culhane, Catherine L. Wilson, “Attachment and Perfection of Security Invests under Revised Article 9: A ”Nuts and Bolts“ Primer”, *AIB Law Review*, Vol. 9, 2011.

William Davies, “Romalpa Thirty Years on - still an Enigma?”, *Hertfordshire Law Journal*, Vol. 4,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Retention of Title under UCC

Joo-Hee MIN

This study describes the retention of title under UCC. UCC § 2-401 prescribes that any retention or reservation by the seller of the title (property) in goods shipped or delivered to the buyer is limited in effect to a reservation of a security interest. It means that the retention of title generates a security interest in the same way like a charge. To be effective, a security interest must be attached or perfected. Once attachment occurs, a security interest is enforceable against the buyer. Once a security interest is perfected, a security interest is enforceable against third parties.

Under UCC, a simple retention of title clause is valid as long as it is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of sale. If the seller acquires a perfected security interest, he as a secured party can enjoy a priority against other creditors. But if a security interest is not perfected but PMSI is afforded, the seller has a special priority.

Secondly, under UCC § 9-335 and 9-336, if a security interest under an enlarged retention of title clause is perfected, the seller as the secured party has a valid security interest in the product or mass into which his goods have been mixed or commingled. But in terms of assession of goods, as the seller has a security interest only in his goods, if the seller wants to enlarge his security interest in the whole, a security agreement should cover its intention.

Thirdly, under UCC § 9-315, a security interest in proceeds of subsale of goods supplied by the seller is a perfected security interest if the security interest in the original collateral was perfected. But if the proceeds are cash proceeds, it should be identifiable from other funds of the buyer.

keywords : Retention of Title, Perfected Security Interest, Assession of Goods, Commingled Goods